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4.2.1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4.1.24.~'24.2.15.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
| | | |

3. 아울러 동 입법예고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중앙행정기관(19부), 중앙행정기관(19청), 중앙행정기관(2원), 중앙행정기관(4처), 중앙행정기관(7위원회), 시도 방역부서,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련 협회

주무관 이민희 서기관 박경일 방역정책과장 이동식 전결 2024. 1. 25.

협조자

시행 방역정책과-623 (2024. 1. 25.)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20 팩스번호 044-868-0628 / lmh5124@korea.kr / 대한민국 공개